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  
 처리부서 : 법무담당관실(시청본관 3층) 담당 김철수




문서번호 법무 11010-94

시행일자 1997. 1. 13.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 담당관			
법제계장			
기안	김철수 과		
	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발령

1.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예규안 각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예규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629호. 끝.

# 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농수산유통과장

제목 예규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가. 발령예정일 : 1997. 1. 15.

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629호(생략)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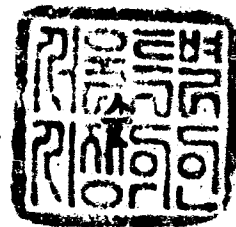
# 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7년 1월 15일

서울특별시장 조



#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

제정일자	1998.12.14	제	12	호
담당	인	제	심	사

## 1. 개정이유
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5호, 같은조 제3항의 규정과 농림부의 쓰레기유발부담금제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부과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배추의 부담금 요율을 우선 상향조정 함으로써 출하농산물의 산지포장화를 유도하여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고, 시장내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산지포장화가 미흡한 배추에 대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현행 톤당 3,000원에서 톤당 6,000원으로 상향하여 징수토록 함.

품 목	요 율 ( 원/톤 )	
	현 행	개정(안)
마늘	5,000	5,000
배추	3,000	6,000
무, 양배추	700	700
대파	500	500
양파	400	400

## 3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5호, 같은법률시행규칙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(관리공사 '97년도예산 쓰레기유발부담금목에 편성)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, 따로 붙임

서울특별시예규 제 호

##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의2제2항의 표중 품목란 배추의 요율(원/톤) "3,000"을 "6,000"으로 한다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

## 신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51조의2(쓰레기유발부담금) ① (생략)</p> <p>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품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요율(원/톤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마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배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3,000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무·양배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양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③ ~ ⑦(생략)</p>	품목	요율(원/톤)	마늘	5,000	배추	<u>3,000</u>	무·양배추	700	대파	500	양파	400	<p>제51조의2(쓰레기유발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품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요율(원/톤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마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배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5,000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무·양배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양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품목	요율(원/톤)	마늘	5,000	배추	<u>5,000</u>	무·양배추	700	대파	500	양파	400
품목	요율(원/톤)																								
마늘	5,000																								
배추	<u>3,0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
무·양배추	700																								
대파	500																								
양파	400																								
품목	요율(원/톤)																								
마늘	5,000																								
배추	<u>5,0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
무·양배추	700																								
대파	500																								
양파	400																								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50-8403 / 전송 750-8413  
 처리부서 : 농수산유통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6층) 담당 유인선

문서번호 농유 51160 - 33

시행일자 '97.01.7.

수신 법무담당관

선결			지시		
접	일자	시	결	법재계장	
수	번호	38	재	법재계장	
처리과			공		
담당자			람		

## 제목 예규 발령 의뢰

1. 농유51160 - 3112 ('96.12.19)호 및 농림부 시장51160 - 385 ('96.12.3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농림부로부터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승인통보가 있어 따로붙임과 같이 발령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개정규정안 4부.

방침서 사본 1부.

농림부 시장51160 - 385 ('96.12.31)호 승인공문 1부 끝.

농수산유통과장